대학평의원회 회의록(04)

일　　시 : 2017년 01월 25(수) 10시

장　　소 : 백주년기념관 소회의실

참 석 위 원 : 조치웅(위원장), 김영상, 김영안, 김현희, 오복자, 위경수, 이준태, 장성일

불 참 위 원 : 김철호, 조석호, 최준환

첫　기　도 : 김영안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회

위원장이 교수대표(4명), 직원대표(3명), 학생대표(1명) 등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됨에 따라 제4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함.

위 원 장 : 금일에 회의 안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함

안건 1. 위원변경

안건 2. 2016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서(2차 안) 자문

안건 3. 2017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 자문

안건 4.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배정에 따른 차입 자문

안건 5. 교직원연봉제 운영 규정(안) 자문

위원변경

위 원 장: 안건 1. 학생위원 변경 안건을 상정함. 총학생회장의 선출에 따른 위원변경건임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거수로 동의 표명을 요청함

전체위원: 거수함

위 원 장: 본 안건 1. 김재용 위원을 위경수 위원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별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함

2016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서(2차 안) 자문

위 원 장: 2016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2차 안) 자문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대학

의 예산팀장에게 상세내용을 설명을 요청함.

예산팀장: 추가경정 자금예산서(2차 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규모가 약 77억원 증가됨

주요증가 사유 - 남녀생활관 1개 층(4층) 수직 증축(건축기금), CK-II 사업비 본예산 책정 후 입금, 영빈관 리모델링, 생활관 매트리스 교체, 등록금(대학원생 소폭 늘어남, 학부 재학생 충원율 상승), 장학금(학생장학금 추가지급, 국가장학금 계획대비 늘어남), 교원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2) 세부사항:

예산부분 - 전입기부수입 약 47억원 증가(주요영향: CK-II, 국가장학금)
투자 및 기타자산수입 약 19억원 증가(주요영향: 건축)

비용부분 - 인건비 약 4억원 증가(주요영향: 교원충원)
연구학생경비 약 38억원 증가(주요영향: CK-II, 국가장학금)
고정자산매입지출 약 21억원 증가(주요영향: 건축)

위원 ○○○: 차기이월이 약 9억여원이 발생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가?

예산팀장: 법적인 부분은 약 2%이내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음

위원 ○○○: 대학의 재정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하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책정 및 사용에 있어 좀더 꼼꼼히 살펴 주기를 거듭 요청함

위 원 장: 이의가 없으면 안건 2(추가경정 자금예산서(2차 안) 자문)에 대해 거수로 표해주기를 요청함

전체 위원: 거수함

위 원 장: 본 안건 2에 대해 별 위원들의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2017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 자문

위 원 장: 2017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 안건에 대해 회의에 상정함. 본 안건에 대해 예산팀장에 설명을 요청함.

예산팀장: 2017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3% 증가함. 금액으로는 약 106억원 증가됨. 하지만 살렘관 기숙사 재건축 등 건축비용 144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거할 경우 실제적으로는 전년대비 약 1% 줄어듦.

2) 수입부분 상세설명:

- 등록금: 2016년 2차 추경예산 대비 2억 5천만원 감소(주요내용: 등록금 동결, 명목등록금 9천만원 감소, 신입생 정원감소분 반영 약 6천만원, 학점등록금 미반영 약 1억원)

- 전입 및 기부수입: 2016년 2차 추경예산 대비 약 19억원 감소(주요내용: CK-II 사업비 미반영, 향후 입금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
- 교육부대수입: 2016년 2차 추경예산 대비 약 1.9억원 감소(주요내용: 16년 입시지원자 수가 평년에 비해 약 6,400명이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인 상승한 것으로 보고 본 예산 책정에는 과거 평년치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책정함)
- 투자와 기타자산: 2016년 2차 추경예산 대비 약 59억원 증가(주요내용: 건축을 위해 약 80억, 기타 기금인출 43억 등 반영)
- 고정자산매각: 2016년 2차 추경예산 대비 약 12억원 증가(주요내용: 수동, 천안삼육식품 부근 교육용부지 매각)
- 고정부채입금: 63억원 증액(주요내용: 건축 관련 사학에서 약 63억원 융자받을 계획)

3) 비용부분 상세설명:

- 인건비: 2016년 2차 추경예산 대비 약 7.3억원 증가(주요내용: 교원충원에 따른 증가분 6.6억원 증가, 직원 0.6억원 증가, 3.5% 인상(공무원급여 인상율), 명절수당 기존 120%에서 80%로 인하 등)
- 관리운영비: 2016년 2차 추경예산 대비 약 3.7억원 증가(주요내용: 시설관리- 16년 대비 동결, 일반관리 - 6억증가(신축기숙사 집기류 구입비 8억증가, 일반소모품 2억 감액), 운영비 2.4억 감소(CK-II 미반영, 111주년 행사비 포함)
- 연구학생경비: 2016년 2차 추경예산 대비 3% 감소(주요내용: 16년 본예산대비 10% 증가(26.1억원→28.8억원)하였으나, CK-II 미반영, 입시관리비 10%감소(1.1억원) 등으로 인함)
- 지급이자: 2016년 2차 추경예산 대비1.2억원 증가(신축 기숙사 사학 융자금에 따른 이자부분)
- 예비비: 4.1억원 계상함(총비용 대비 0.45%로 법적한도인 1%미만으로 계상함)
-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 2016년 2차 추경예산 대비 3천만원 감소(임의기금적립에서 3천만원 감소함)
- 고정자산매입 지축: 2016년 2차 추경예산 대비 112억원 증가(동문토지매입 9.5억원 증가, 건설가계정 113억 증가(기숙사신축 70억, 기숙사증축 45억, 사택3개동 25억, 수영장 리모델링 및 화장실리모델링 3.7억), 기계기구매입비 8.7억 감액, 집기비품매입비 1.4억 감액)

위원 ○○○: 교원충원이 2016년 2학기에 많이 충원되었고 2017학년도에도 많은 교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획에 잘 반영하고 있는가?

예산팀장: 2016년 하반기에 33명(연구중심교수, 산학협력중심교수, 교육중심교수 등)을 채용하였고,

2017년에도 상반기 현재 10명 정도 채용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예산을 계획하는데 반영함. 이와 더불어 2017년에 교원 10명, 직원 10명이 퇴직이 예상되어 이도 반영하고 있음

위원 ○○○: 학생연구경비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는데(11억 8천만원 감소) 교수의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 혹시 연구처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가?

예산팀장: 실제로는 줄지 않았다. 작년 본예산에 비해 2.5억 증가했고 학생연구경비가 단순히 교수님들의 연구비만으로 편성하는게 아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CK-II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향후 추경 시 이를 반영할게 될 경우 올해보다는 증가하게 됨

위원 ○○○: 연구비 만은 어느정도 규모인가?

예산팀장: 지난해 11.9억에서 11.2억으로 약 7천만원 감소함. 하지만 연구처와의 협의가 진행되었고 교수님의 연구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위 원 장: 건축에 많은 비용이 책정되었는데, 충분한 검토 및 구성원의 합의나 설명이 되었는가? 아울러, 우리대학교의 건축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마련되어있는가?

예산팀장: 건축비 관련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예정인 사업은 남녀기숙사 4층, 5층 증축, 살렘관 철거 및 신축, 동문사택 3개동 건축 등이며, 교수회의, 직원회의에 수차례 설명회를 가졌고 총장의 서신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원 ○○○: 실제로 국토부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것이고 건축물의 노후화 등을 볼 때 현재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임

위원 ○○○: 간혹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금액을 쪼개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타 대학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대학도 이런 사례는 없는가?

예산팀장: 전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 원 장: 향후 진행될 공사건에서도 예산팀장 및 관계자들이 관리하셔서 불필요한 공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요청함

위 원 장: 다른 이의가 없으면 안건 3(2017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 자문)에 대해 거수로 표해주기를 요청함

전체 위원: 거수함

위 원 장: 본 안건 3에 대해 별 위원들의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배정에 따른 차입 자문

위 원 장: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배정에 따른 차입 자문 안건에 대해 회의에 상정함. 안건 심의전에 숙지하고 동의할 사항 안내하고(본 안건 내용이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계약을 진행할 사항으로 대략적인 건축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본 평의원회에서만 공유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 함)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구함

전체위원: 동의함

위 원 장: 본 안건의 취지에 대해 예산팀장에 설명을 요청함.

예산팀장: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배정에 따른 차입 자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요지: 기숙사 신축을 위한 사학진흥기금 융자
2) 건축이유: a. 현재 기숙사 중 살렘관의 노후화(1987년 완공 건물로 리모델링 어려움)
   b. 국제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숙사 확보
3) 건축장소: 살렘관 철거후 신축
4) 건축면적: 연면적 4,453㎡(1,350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5) 공사기간: 2017년 5월 ~ 2018년 8월(약 16개월)
6) 개간예정: 2017년 9월
7) 수용인원: 216명(2인실 기준, 108실)
8) 건축비용: 약 70억원
9) 조달방안: 사학진흥기금 융자 63억원(3년거치 7년 상환, 연 2.19% 변동금리), 그 외 비용은 기금에서 조달

위원 ○○○: 국제화사업(외국인유학생 유치) 관련 좀더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유학생들을 통해 얼마나 재정적 이익을 볼수 있는가? 투자대비 효과를 거두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위원 ○○○: 현재 국제화사업의 경우 우리로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유학생 유치 TFT를 통해 상당한 결과를 도출하여 많은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또한, 현재 기숙사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먼저 데려오고 그 상황을 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음

위원 ○○○: 타 대학은 이미 국제화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대학에서도 기숙사 신축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함

위원 ○○○: 외국인유학생 유치 TFT에서 분석한 자료 및 보고서를 전체 구성원에게 발표하고 구성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봄

위원A, B, C: 동의함

위원 ○○○: 이미 교수회의에서 기초안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좀더 진행된 내용은 한번더 보고회를 가지는 것도 맞다고 봄

위 원 장: 향후 진행될 교수회의에서 발표하고 이에대한 구성원의 피드백을 구하는 절차는 요구하기로 함

위 원 장: 다른 이의사항이 없을 경우 안건 4에 대해 거수로 표해주기를 요청

전체위원: 거수함
위원장: 본 안건 4에 대해 위원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교직원연봉제 운영 규정(안) 자문
위 원 장: 교직원연봉제 운영 규정(안) 안건에 대해 회의에 상정함. 본 안건에 대해 김영사위원에게 취지 및 배경 설명을 요청함.
김영상 위원: 교직원연봉제 운영 규정(안) 내용을 간략히 설명함.

1) 취지 및 배경: 대학등록금 수입 감소 및 향후 대학정원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 감소 대비. 현재 우리대학교의 보수규정은 호봉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호봉상승으로 인해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음

2) 주요내용: 신입 교원 및 직원에 대해 연봉제 실시(기존 교직원은 그대로 연봉제 시행. 단, 향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X등급 이하를 받아 재학생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음)

위원 ○○○: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우수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우수교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초임 연봉수준은 높여야 함
김영상 위원: 이 규정의 경우 현재 연봉제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적인 규정으로 이 규정 이외에 교직원 보수규정 내 성과급 지급 및 특별채용에 따른 연봉책정 등을 통해 우수한 자원이 보수 때문에 못오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면밀히 검토 후 시행하겠음

위원장: 다른 이의사항이 없으면 거수로 가결함을 표시해 주기를 요청함.
전체 위원: 거수함
위원장: 안건5(교직원연봉제 운영 규정(안) 자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단, 우수교원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대학측에 요청하는 것으로 자문을 대신함.

4. 회의 종료
위 원 장 : 2016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종료를 선언함.

끝 기 도 : 장성일

붙임3.

교직원연봉제 운영 규정

[제정: 2017. 1.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하는데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 대학교 정규직(연봉제)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외국인 전임교원의 연봉계약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연봉제"란 급여를 연단위로 결정하는 급여 제도를 의미한다.

②"기본급"이라 함은 연봉 결정의 기준금액을 말한다.

③"성과급"이라 함은 조직이나 개인의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변동성 급여를 말한다.

④"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금액을 말한다.

⑤"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때 해당 월 지급액을 1일분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⑥"초임 연봉"이라 함은 직급별 임용 교직원에 대해 정해진 연봉액을 말한다.

제3조(교직원의 연봉 결정 및 조정)

①교직원의 연봉은 업적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매 학년도 초에 책정한다. 다만, 외국인 전임교원 및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 교직원의 연봉은 자격조건, 경력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최초 임용계약 시 정한다.

제4조(연봉지급)

①교원의 연봉은 본봉 및 연구비로 구성하며, 직원은 본봉으로 한다.

②교직원의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봉 월액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④신규임용, 휴직, 복직 및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사망 또는 면직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⑤교직원 복무규정에 의한 병가 중의 연봉지급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⑥인사규정에 의거해 휴직한 교직원의 경우 휴직일이 속한 첫째 달은 기본급 전액을, 둘째 달은 기본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 초일이 급여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는 첫째 달은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⑦휴직한 교직원이 복직할 경우의 연봉은 휴직 당시의 기본급으로 결정한다. 단, 대학이 필요에 의해 휴직

을 인정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⑧연구년 교수의 급여는 교원연구년 규정에 의한다. 특히 유급 해외연수의 허가를 얻은 교직원의 연수기간 중 급여는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조(연봉 산정을 위한 업적평가)

①교원의 연봉은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및 정기평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정기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하며, 직원의 연봉은 직원 근무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산정한다.

②매년 연봉은 전년도 연봉에 당해년도 연봉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연봉인상률은 전임교원 및 정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인상률과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성과인상률의 합으로 구성되며, 각 인상률은 당해년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학과(부)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학과 소속교원의 연봉 인상금액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연봉인상률 및 조정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연봉결정 통보)

제5조에 의하여 연봉이 결정되면 교직원과 별도의 연봉 체결을 하지 않고 연봉 통보로 대체한다.

제7조(연봉 이의신청 및 재계약)

①교직원이 대학이 책정하여 통보한 연봉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대학이 책정한 연봉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연봉 통보에 동의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교직원연봉책정위원회)

①교직원연봉책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부총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외에 기타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교직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 기준에 의거 연봉 감액 및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정한다.

⑤위원회는 교직원 연봉 이의 신청을 심의하여 조정한다.

제9조(연봉 지급의 제한)

교직원의 휴직, 징계, 직위 해제 등에 해당하는 신분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봉월액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연봉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조 치 웅 _____

서 기 김 영 상 _____

위 원 김 영 안 _____

위 원 김 철 호 불참

위 원 김 현 희 _____

위 원 오 복 자 _____

위 원 위 경 수 _____

위 원 이 준 태 _____

위 원 장 성 일 _____

위 원 조 석 호 불참

위 원 최 준 환 불참